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정을호·복기왕·안도걸

조 국・진성준・신영대

조정식 • 문정복 • 김윤덕

신정훈 · 김문수 · 백승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각 대학이 1.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.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0 항 및 제11항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0항 중 "1.5배"를 "1.2배"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 중 "1.5배" 를 "1.2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	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		
원회) ① ~ ⑨ (생 략)	원회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		
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	10		
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			
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하게	<u>1.2</u> 判		
하여서는 아니 된다.			
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	①		
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			
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			
승률의 <u>1.5배</u> 를 초과하여 인상	<u>1.2</u> 增		
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			
당 학교에 행정적・재정적 제			
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.			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	